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 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개정)
- 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3 신설)
- 다. 유통이력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10조 별표 2 개정)
- 라. 권한의 위임(장관→농관원장) (안 제9조1항제2의3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불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 업무”를 “조사, 법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이 유통이력관리 및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사후관리 업무”로, “표시 조사자료”를 “표시,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자료”로,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을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유통이력수입농산물등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

년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관한 다음 각 호(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을 “원산지표시 등의 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한다.

2의3.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수입농산물 등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 등 사후관리 및 이 영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제9조의2제4호 중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를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영은 「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u> 」-----<br>-----.                                                                                  |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 등을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u> 」-----<br>-----<br>-----<br>-----<br>-----<br>-----<br>-----<br>-----<br>-----<br>-----<br>-----. |
| 제6조의2( <u>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u>조사 업무</u>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u>표시 조사자료</u> 를 통합관리하는 시                                                                                                                                   | 제6조의2( <u>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u> ) ① -----<br>----- 조사, 법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이 유통이력관리 및 법 제10조의3                                            |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 7. (생략)
- ④·⑤ (생략)

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 사후관리 업무--- 표시,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자료--  
-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

② -----  
-----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 시스템-----  
-----  
-----  
-----  
-----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
2. ~ 7.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

제7조의3(유통이력수입농산물등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관한 다음 각 호(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  
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

2.·2의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  
게 위임한다.

1. ~ 5. (생략)

6.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

-----  
----- 원산지표시 등의 관  
리시스템-----

2.·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  
이력수입농산물 등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 등 사후관리 및 이 영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유통이  
력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제2항제1호-----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신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생략>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시스템 -----  
----
-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수입유통이력관리)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  
-----  
-----.

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자목에서 과목까지는 최근  
2년간으로 한다)-----

[illegible]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           |
| 1) 삭제 <2017. 5. 29.>                                                                       |               |                   |          |           |
| 2)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8)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0)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           |
| 1) 삭제 <2017. 5. 29.>                                                                       |               |                   |          |           |
| 2)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8)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0)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                                                                                                                   |                 |                   |       |       |
|-------------------------------------------------------------------------------------------------------------------|-----------------|-------------------|-------|-------|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6호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                 |                 |       |       |          |
|-------------------------------------------------------------------------------------------------------------------|-----------------|-----------------|-------|-------|----------|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5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5호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1호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자.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차.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카.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과.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시료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 제6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
| 연 락 처            | (044) 201 - 2276 |